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건 검 토 보 고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근거 및 지원체계 마련 등〉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31호)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22호)
-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48호)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02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15
1. 총괄 검토	15
가. 제정안의 발의배경	17
나. 입법 필요성	21
3. 조문별 검토	25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25
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32
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등	35
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해제 및 행위제한, 개발에 관한 사항	44
마. 도시연계사업의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58
바. 사업시행자의 선정	62
사. 조성 중 토지의 관리 및 준공 등	69

아. 개발 지원 특례 등	74
자. 재생에너지 및 전력 공급에 관한 사항	77
차.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원에 관한 사항	96
카.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4
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36
파.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위한 특례	138
하. 보칙 및 벌칙 등	140

I. 제안경위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531)】

1. 발 의 자 : 김원이의원 등 27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10.
3. 회부연월일 : 2025. 10. 13.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822)】

1. 발 의 자 : 김정호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30.
3. 회부연월일 : 2025. 10. 31.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848)】

1. 발 의 자 : 정진욱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31.
3. 회부연월일 : 2024. 11. 3.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002)】

1. 발 의 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7.

3. 회부연월일 : 2025. 11.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531)】

제안이유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도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서남권 등)은 생산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산업·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전력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에너지 생산·소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효율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감은 물론, 송전선로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핵심 방안의 하나로, 지산지소(地產地消)형 에너지 생산·소비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100% 활용하기 위하여 공급과

수요를 일체화한 분산형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과 정주기능 등을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내 성장 유망 산업과 기업의 유치 및 이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하위 지구(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형전력망지구, 산업시설지구, 배후정주지구),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연계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안 제7조).

마.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재생에너지자립

도시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변경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방식,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개발행위 및 준공인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례 등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구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사.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가 생산한 전력 전부를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송전·배전사업자는 계통연계를 허용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의 부족한 전력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아.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에 대한 특례, 재생에너지 활용 확산 관련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자. 글로벌 및 첨단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부담금 감면 및 행정·재정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보육·교육·의료시설 지원,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부터 제56조까지).

카.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인·허가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관리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 관리기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지원센터로 하며 관리기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2조).

파.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입주기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

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대한 재정을 지속·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거. 그 밖에 임직원 파견 요청, 보고 및 검사, 적극행정 면책, 벌칙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부터 제86조까지).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822)】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간 에너지 생산·소비 불균형의 심화,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실적의 저조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초광역권(5극3특) 지산지소(地產地消)형 에너지 생산·소비체계 구축이 논의되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특례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100% 사용하는 ‘RE 100’ 산업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지정신청, 변경지정 또는 해제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방식,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개발행위 및 준공인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례 등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구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 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가 생산한 전력 전부를 산업시설 지구 입주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송전·배전사업자는 계통연계를 허용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의 부족한 전력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 사.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에 대한 특례, 재생에너지 활용 확산 관련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 아.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인·허가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 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대한 재정을 지속·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 차.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의 지붕·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에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음(안 제78조).
- 카.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의 지붕·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

업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848)】

제안이유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과제가 아닌, 전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음.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의 전량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전남, 전북, 울산 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의 생산이 늘어나고 있으나, 전기 수요는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생산과 소비 간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생산지와 소비지 간 대규모·원거리 송전선로 확충이라는 기존의 접근방식은 국가의 재정적, 행정적, 사회적 부담이 크며, 지역주민에 대한 수용성 확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분야에서 RE100 이행에 동참하는 기업을 산업단지에 입주시키고, 산업단지와 근접거리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재생에너지 공급·순환 체계를 구상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산업

· 정주 기능이 복합된 재생에너지자립단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한편,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의 수요기업 유입과 투자 유인 등을 위한 규제 특례 및 각종 시책을 지원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공급을 통해 친환경 산업입지 및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고, 지역 내 유망기업을 유치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에너지 활용 촉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생에너지자립단지와 하위 지구(재생에너지지구, 전력망지구, 산업지구, 정주지구), 재생에너지자립단지개발사업,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연계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함(안 제6조).

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단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실무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재생에너지자립단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

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및 변경지정, 지정해제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재생에너지자립단지개발사업 및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연계사업 추진 방식,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개발행위 및 준공인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사. 재생에너지지구내 사업시행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 허가 제한, 재생에너지지구 및 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의 의무 부여,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선정 및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한 전기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아. 전력계통의 연계, 부족한 전력의 공급, 발전사업의 주민참여, 이격거리 적용 특례 등 재생에너지지구 및 전력망지구에 대한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

자. 산업지구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 지원, 근로자의 생활·정주를 위해 주택 공급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외국교육기관 설립,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등 각종 특례 규정을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

차. 재생에너지자립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안전·환경 등 타 법령에 따른 민원의 신속처리, 필요한 규제 특례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굴·설계·운영하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특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속확인,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록 규정함(안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 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시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내 각종 특구·지구 등의 지정을 우선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관광사업 지원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함(안 제59조부터 제61조).
- 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리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 관리기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지원센터로 하며 관리기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2조).
- 파.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등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리 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63조부터 제72조까지).
- 하. 그 밖에 임직원의 파견 요청, 지원센터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 의무, 규제특례 업무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벌칙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3조부터 제81조까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002)】

제안이유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도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을 비롯한 서남권은 생산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은 전력 공급 부담이 심화되는 등 지역 간 에너지 생산·소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불균형은 전력 계통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새만금권은 대규모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송전망 용량 한계와 전력 연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생산된 전력이 지역 내 산업단지 및 생활 부문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지역 내 전력 활용률이 낮고, 생산 전력이 외부로 송전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송전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지산지소(地產地消)형 분산 에너지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를 통해 새만금을 포함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 산업·정주 기능이 결합된 재생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송전 갈등을 완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하위 지구(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형 전력망지구, 산업시설지구, 배후정주지구),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연계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7조).
- 마. 재생에너지자립都市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변경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방식,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개발행위 및 준공인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례 등 구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 사.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가 생산한 전력 전부를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송전·배전사업자는 계통연계를 허용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의 부족한 전력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 아.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에 대한 특례, 재생에너지 활용 확산

관련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자. 글로벌 및 첨단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부담금 감면 및 행정·재정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보육·교육·의료시설 지원,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부터 제56조까지).

카.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인·허가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관리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 관리기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지원센터로 하며 관리기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2조).

파.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입주기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

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대한 재정을 지속·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거. 그 밖에 임직원 파견 요청, 보고 및 검사, 적극행정 면책, 벌칙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부터 제86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제정안들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자 간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이 제약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산업과 정주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재생에너지자립 도시 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또는 재생에너지지구)¹⁾, 분산형전력망지구(또는 전력망지구), 산업시설지구(또는 산업지구), 배후정주지구(또는 정주지구)를 하나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또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안에 유기적으로 조성하고,

조성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및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 및 조성, 각 지구별 사업시행자 선정방식, 재생에너지 및 전력 공급, 계통 연계에

1) 괄호 안의 표기는 정진욱의원안에 따른 주요 용어 정의를 명시한 것임. 이하 서술에서는 가독성을 위해 4개 제정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에 따른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형전력망지구, 산업시설지구, 배후정주지구,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지칭하였음. 반대로, 정진욱의원안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서술에서는 정진욱의원안에 제시된 명칭을 사용하였음.

또한, 제정안에 공통된 사항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조문을 인용하는 때에 조문 번호 외에는 조문 내용이 4개 제정안 모두에 동일한 경우, 김원이의원안을 기준으로 조문번호를 명시하였음.

관한 사항,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관리체계, 그 외 보칙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구분	김원익의원안	김정호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안호영의원안
법안명	재생에너지자립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u>초광역권</u> <u>재생에너지자립</u> <u>도시 조성 및</u> <u>RE100</u> <u>산업단지</u> <u>전환을 위한</u> <u>특별법안</u>	재생에너지자립 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재생에너지자립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문	8장 86개조문	9장 94개 조문	7장 81개 조문	새만금 개발
주요 비교 사항	-	제8장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위한 특례 추가	제5장 재생에너지자립 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에 특례부여 및 임시허가·실증 특례 등 추가	제15조 도시연계사업의 범위에 새만금개발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명문화
	재생에너지자립 도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	재생에너지자립 도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	미포함	재생에너지자립 도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

한편 제정안들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면, 김정호의원안은 나머지 세 제정안과 달리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위한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에 관한 지원 사항을 별도 장(제8장)으로 구성하여 포함하고 있음.

정진욱의원안은 제5장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나머지 세 제정안과 달리 시·도지사의 신청으로 재생에너지자립단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와 입주기업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안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등을 부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마지막으로 안호영의원안은 안 제15조에 규정된 도시연계사업의 범위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시키고 있음.

가. 제정안의 발의배경

재생에너지 및 전력 생산의 생산지 및 소비지 간 불균형 문제는 국가차원의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을 위한 도전과제로 제시되어 왔음.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지역별 전력 발전량 대비 판매량 현황을 보면,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력의 발전량 대비 판매량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재

생에너지 발전이 밀집되어 있는 서남권을 중심으로 전력의 발전량 대비 판매량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

2024~2025년 지역별 전력 발전량 대비 판매량 현황

구분	2024년			2025.1~7월		
	발전량 (GWh)	판매량 (GWh)	비율	발전량 (GWh)	판매량(GWh)	비율
서울	5,816	50,352	865.7	2,166	28,908	1,334.6
부산	37,096	21,851	58.9	19,369	12,500	64.5
대구	2,956	16,747	566.5	2,540	9,541	375.6
인천	49,725	25,964	52.2	27,155	15,033	55.4
광주	894	9,343	1045.1	634	5,848	922.4
대전	301	10,170	3378.7	196	5,884	3,002.0
울산	33,015	31,919	96.7	19,458	17,516	90.0
세종	5,131	4,152	80.9	2,990	2,451	82.0
경기	88,937	143,302	161.1	53,242	83,460	156.8
강원	24,661	16,685	67.7	15,743	9,635	61.2
충북	4,355	27,567	633.0	3,931	15,576	396.2
충남	103,618	50,037	48.3	52,613	29,144	55.4
전북	15,878	21,640	136.3	9,418	12,571	133.5
전남	71,665	43,581	60.8	41,275	18,962	45.9
경북	99,763	43,733	43.8	65,243	24,844	38.1
경남	45,709	36,578	80.0	25,612	21,377	83.5
제주	4,681	6,197	132.4	2,715	3,575	131.7

자료: 산업통상부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은 대부분 계통포화지역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계통 접속이 제한²⁾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전망 건설에는 주민수용성 확보, 이해관계 조율 등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음. 특히 호남지역의 경우 전력수요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과다하고 전력망은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2)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남, 전북 지역의 경우 2031년 12월까지, 강원 경북 지역의 경우 2026년 6월까지 접속이 제한되어 있음.

호남권 전력수요 및 발전설비

(단위: GW)

구분	전력수요 (’24. 하계)	발전설비							
		합계	중앙급전발전기				재생e 발전기*		
			원전	LNG	석탄	소계	태양광	풍력	소계
전북	3.4GW	12.8	-	0.7	0.7	1.4	8.8	2.6	11.4
전남	6.7GW	47.6	5.9	2.5	0.7	9.1	14.6	23.9	38.5
합계	10.1GW	60.4	5.9	3.2	1.4	10.5	23.4	26.5	49.9

주: 상업운전+접속예정 물량 포함

자료: 산업통상부

뿐만 아니라 날씨에 따른 발전량의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성상 전력계통의 부담 및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의 전력을 RE100 수요 기업 및 산업시설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예컨대, 산업체 조업률, 냉난방 수요 등이 감소하여 전력수요가 낮은 봄철 연휴 기간 등에는 날씨가 맑아 태양광 발전이 급격히 증가하여 전력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에서도 발전량 조절이 어려운 재생에너지의 특성상 전력수급 균형 유지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태양광 발전이 호남·경남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별 발전량이 송전 용량과 수요를 초과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태양광 등의 출력 제어를 시행하고³⁾, 호남 - 수도권 송전망 대폭 확충, 재생에너지 저장·안정화 설비 보장, 재생에너지 지속운전성능 확보 및 타 전원 유연성 제고, 지역 간 전력 불균형 완화를 위한 요금체계·입지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호남·경남권 지역에 재생에너지 전력 발전이 집중된 것에 비해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구조적인 불균형으로 인하여 이러한 대책의 효과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들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공급기반을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조성을 통해 확보하고, 해당 지구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능형 전력망을 통해 산업시설지구 및 배후정주지구로 공급하는 분산형전력망 지구를 조성하며,

산업시설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적·재정지원과 함께 정주·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례들을 부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산업과 정주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 신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임.

3)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봄철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를 위한 선제적 조치 추진」, 2023.3.24.

나. 입법 필요성

현행 체계 하에서의 재생에너지 RE100 이행 수단은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자가발전으로 마련되어 있음.

RE100 이행수단별 주요 내용

수단		설명	비용
① 녹색 프리미엄		· 한전이 녹색 프리미엄을 부과하여 재생에너지 전기 판매 * 프리미엄 판매 재원은 에공단에 출연→재생에너지 재투자	10원/kWh (전력비용 별도)
② REC 구매		· 기업이 거래시장에서 재생e 인증서(REC)를 직접 구매	72원/kWh (전력비용 별도)
③ PPA	제3자	· 한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202.8원 /kWh
	직접	· 재생e전기공급사업자 중개로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 계통연계형(Off-Site) : 한전 송배전망을 통해 전기 공급 - 비계통연계형(On-Site) : 한전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공급	
④ 자가 발전		· 기업 등이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인	127원/kWh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이행수단 중 녹색프리미엄 및 REC 구매는 기업이 한국전력 공하나 현물시장을 통해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풍부한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직접 산업시설에 공급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내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는 민간 소유 소규모 설비가 대부분인 상황⁴⁾으로 RE100 기업의 PPA 계약을 통한 물량 확보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PPA 계약의 특성상 거래가격이 발전단가가 아닌 전기요금에 연동되어 결정되므로 기업의 규모 또는 협상력에 따라 계약단가가 달라지고, 입주기업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경제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기존 PPA제도와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제도 비교

구 분	기존 제도 (재생e 직접PPA)	재생e자립도시 공급 사업
계약 구조	•PPA사업자-개별기업 1:1 계약 체결 →기업이 RE100 추진 시 다수 PPA 사업자와 수많은 1:1계약 필요	•공급사업자-입zug업 간 계약 체결 →단일 계약 下 공급사업자가 책임 지고 전기 공급
경제성	•기존 제도 下 요금절감 요인 없음 →요금 할인 시 일시적 재정투입 의존	•재생e 발전단가 인하 지원을 통해 경제성 있는 전용 요금제 마련

자료: 산업통상부

따라서 제정안들을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 지능형 분산 전력망 구축을 통해 인근 산업단지와 거주지구의 전력수요를 직접 충당하고, 이 과정에서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한 전력 거래제도를 별도로 마련하여 거래비용을 인하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

4) 상업 운전중인 태양광(26.0GW) 중 1MW 이하가 80%(21.5GW) ('24년말)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들은 기업의 입주 촉진 및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비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공유 부지 임대료 감면, 발전설비 저리 용자, 전력망 구축비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정안들은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선정하여 입주기업들이 해당 공급사업자에게 전기 구매 대금을 일괄 지급하고, 공급사업자는 입주기업에게 전용 요금제로 전기를 판매하는 방식의 전력거래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전용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경우 당초 사업시행자 선정 시 제시한 발전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가 정책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계통 포화지역이라 할지라도 일정 조건하에 접속이 허용되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발전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받는 측면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적으로 설계된 발전단가를 초과하지 않고 공급하기 위한 입법적인 고려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는 운영과정에서 전력 생산여건의 변화,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전력생산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높아지는 등의 비용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제정안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선정 시 고려한 발전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음에 따라 수익 흐름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효과가 발생함.

이를 고려하면, 제정안 시행 시 새로운 전력거래제도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 전용 전기공급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위험분담과 그에 상응하는 이윤 보장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래체계를 함께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하에서는 제정안을 조문별로 검토함.

3.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각 제정안은 특별법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연계·순환될 수 있도록 전력의 생산·공급 기능과 이를 활용하는 사업·정주기능을 집적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구역을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또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개념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음.(안 제2조).

제정안 조문대비표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김원이·안호영의원안)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 구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재생에너지자립 <u>단지</u> 구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호의원안) <u>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u> <u>구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u>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u>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u> <u>장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 에</u> <u>너지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u> <u>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u> <u>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u> <u>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u>전력 공급을 통해 친환경 산업입지 및</u> <u>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고, 지역 내 유망</u> <u>기업을 유치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에너</u> <u>지 활용 촉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u> <u>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재생 에너지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재생 에너지를 말한다.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김원이·김정호의원안	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2. “재생에너지자립도시”란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연계·순환될 수 있도록 전력의 생산·공급기능과 이를 활용하는 산업· <u>정주기능</u> 을 집적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재생에너지자립도시”란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연계·순환될 수 있도록 전력의 생산·공급기능과 이를 활용하는 산업· <u>배후정주기능</u> 을 집적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재생에너지자립 <u>단지</u> ”란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연계·순환될 수 있도록 전력의 생산·공급기능과 이를 활용하는 산업· <u>정주기능</u> 을 집적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재생에너지자립 <u>도시</u> 개발사업”(이하 “ <u>도시</u>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15조제3항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제18조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재생에너지자립 <u>도시</u> 개발사업”(이하 “ <u>도시</u>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15조제3항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제18조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재생에너지자립 <u>단지</u> 개발사업”(이하 “ <u>단지</u>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에너지자립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15조제3항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제18조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4. “재생에너지자립 <u>도시</u> 연계사업”(이하 “ <u>도시</u> 연계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에너지자립 <u>도시</u> 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재생에너지자립 <u>도시</u>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4. “재생에너지자립 <u>도시</u> 연계사업”(이하 “ <u>도시</u> 연계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에너지자립 <u>도시</u> 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재생에너지자립 <u>도시</u>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4. “재생에너지자립 <u>단지</u> 연계사업”(이하 “ <u>단지</u> 연계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에너지자립 <u>단지</u> 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재생에너지자립 <u>단지</u>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5.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재생에너지자립 <u>도시</u> 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 그 밖에 재생에너지 전기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	5.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재생에너지자립 <u>도시</u> 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 그 밖에 재생에너지 전기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	5. “재생에너지지구”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재생에너지자립 <u>단지</u> 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 그 밖에 재생에너지 전기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설 및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6. “<u>분산형전력망지구</u>”란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에서 생산된 전기를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에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 전력망 및 그 밖에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7. “<u>산업시설지구</u>”란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기업을 집적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8. “<u>배후정주지구</u>”란 <u>산업시설지구</u>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주거·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9. “입주기업”이란 제64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 전용 전기공급사업자(이하 “<u>전용 전기공급사업자</u>”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판매사업 허가 또는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등록 후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및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6. “<u>전력망지구</u>”란 <u>재생에너지지구</u>에서 생산된 전기를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에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전력망 및 그 밖에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7. “<u>산업지구</u>”란 <u>재생에너지지구</u>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기업을 집적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8. “<u>정주지구</u>”란 <u>산업지구</u>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주거·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9. “입주기업”이란 제64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 전용 전기공급사업자(이하 “<u>전용 전기공급사업자</u>”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판매사업 허가 또는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등록 후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11. “<u>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u>”란 <u>재생에</u>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11. “국가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너지자립단지 내 기업의 투자유치와 기업 활동 등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적용하는 특례를 말한다. 12. “국가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개념과 세부기능, 개발사업 종류 등을 정의하여 특별법 제정목적을 구체화하고, 법 집행·해석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각 지구별 개념 정의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재생에너지 풍부한 지역에서 재생E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위해 전력 생산·공급 + 산업·정주 기능을 집적·연계
① 재생e집적화지구	산업시설지구(산업단지)에 재생e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대단위로 조성되는 발전설비 집적화 지구
② 분산형전력망지구	분산된 태양광, 풍력 등 재생e 발전 전력의 안정적인 송전을 위한 전기설비 등의 설치 지구
③ 산업시설지구	RE100 이행 필요 기업의 입주 공간으로 재생e집적화 지구에서 안정적으로 재생e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구
④ 배후정주지구	산업시설지구에 입주한 기업근로자 및 가족 등의 안정적 정주·교육여건 제공을 위해 조성되는 택지 지구

자료: 산업통상부

또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을 안 제15조제3항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산업시설지구,

배후정주지구 해당)과 안 제1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의 개발실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연계사업(이하 “도시연계사업”)을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기업도시 개발사업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신규 개발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기존의 개별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시연계사업도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포함시켜 제정안에 따른 각종 지원과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의 제명 및 주요 용어 정의와 관련하여, 김원이·김정호 의원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정진욱의원안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김정호의원안은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입법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법률에 따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표하는 제명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들이 재생에너지발전단지 및 산업과 정주기능을 집적하기 위해 조성하는 구역(특구)로서의 의미를 반영하기 위해 각각 “도시”(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와 “단지”(정진욱의원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기업 및 인력의 유치 측면도를 고려하고, 미래적인 이미지를 설정하기 위해 ‘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임.

둘째, 제정안들은 입주기업을 안 제64조⁵⁾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자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와 관련하여, 문언상에서의 관리기관이 안 제62조⁶⁾에 따른 관리기관(재생에너지자립도시지원센터)인지, 아니면 인용 법률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의 관리기관⁷⁾인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5) 제64조(입주계약) ①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제63조제3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산업시설지구(제6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제62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관리) ①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지원센터가 된다. 다만, 지원센터는 산업시설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의 관리기관으로 포섭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⁸⁾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를 모두 총칭하는 것으로 문언상 해석이 가능함.

특히 제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입주기업에 대하여 통상의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과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지원 규정인 안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73조 등이 지원 대상을 모두 “입주기업”이라고만 지칭하고 있어, 위의 해석에 따를 경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관련이 없는 입주기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제정안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의 범위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제30조(관리권자 등)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관리기관 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와 관련된 입주기업의 범위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산업통상부는 ‘입주기업’을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안 제62조에 따른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음.

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개발·육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규제 특례와 개발·실시·관리계획이 타법의 지원·규제 특례와 계획 대비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안 제2조).

제정안 조문대비표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 <u>단지</u> 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 <u>도시</u> 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 <u>단지</u> 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② 제6조에 따른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 종합발전계획 및 제11조에 따른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 기본계획, 제18조에 따른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 개발 실시계획, 제62조에 따른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 관리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른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 종합발전계획 및 제11조에 따른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 기본계획, 제18조에 따른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 개발 실시계획, 제62조에 따른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 관리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해 제정안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법 조항 간의 유사·중복에 따른 집행상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 및 기본계획, 개발실시계획, 관리기본계획이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입법례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법률을 살펴보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구관리계획⁹⁾, 「해

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계획¹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합발전계획¹¹⁾ 모두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조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어서 같은 법 제5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¹²⁾

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7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제29조 및 제46조와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따라서 제정안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및 기본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각 계획별 소관 부처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 및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등

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종합발전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추진체제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2장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 종합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제2장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기본원칙)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 의 조성·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 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 의 조성·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 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재생에너지 생산·소비가 연계될 수 있는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	1. 재생에너지 생산·소비가 연계될 수 있는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
2.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산업시설</u> <u>지구·배후정주지구</u> 등이 연계된 복합도시의 조성	2. <u>재생에너지지구·산업지구·정주</u> <u>지구</u> 등이 연계된 복합도시의 조성
3. 지역 내 성장유망산업 유치 기반 마련	3. 지역 내 성장유망산업 유치 기반 마련
제6조(<u>재생에너지자립도시</u> 종합발전계	제6조(<u>재생에너지자립단지</u> 종합발전계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종합발전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③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의 운영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u>재생에너지자립도시</u>위원회) ①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의 조성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위원회(이하 “위원	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종합발전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③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의 운영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u>재생에너지자립단지</u>위원회) ①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의 조성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위원회(이하 “위원회”라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및 <u>분산형전력망지구</u>의 사업시행자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5.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2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한다)를 둔다. 1.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u>재생에너지지구의</u> 사업시행자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5.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6.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u>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u> 승인 및 취소·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3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추진지원단 설치 등) ①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원단은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생에너지자립<u>도시</u>지원센터) ① <u>산업통상부장관</u>은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u>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두어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 관리·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재생에너지자립단지추진지원단 설치 등) ①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원단은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생에너지자립<u>단지</u>지원센터) ① <u>산업통상부장관</u>은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u>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u>」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두어 재생에너지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할 수 있다. 1.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 지정 및 변경지정, 지정해제 지원 3. 제17조에 따른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및 <u>분산형전력망지구의</u> 사업시행자 선정 및 선정취소 지원 4. 제6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 관리기본계획 수립·운영 5.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의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6.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 내 입주기업의 유치 및 투자 지원 7. 입주기업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 8.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 내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9. 그 밖에 <u>산업통상부장관이</u> 위탁하는 사업 ② <u>산업통상부장관</u>은 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산업통상부령</u>으로 정한다.	자립<u>단지</u> 관리·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 지정 및 변경지정, 지정해제 지원 3. 제17조에 따른 <u>재생에너지지구의</u> 사업시행자 선정 및 선정취소 지원 4.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특례 승인 및 취소·변경에 관한 사항 지원 5. 제6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 관리기본계획 수립·운영 6.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의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7.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 내 입주기업의 유치 및 투자 지원 8. 입주기업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 9.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 내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10. 그 밖에 <u>산업통상부장관이</u> 위탁하는 사업 ② <u>산업통상부장관</u>은 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산업통상부령</u>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시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종합 발전계획 수립을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지구 지정을 지양하고 계획적 조성·관리를 도모하며, 국무총리 산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의 설립·운영을 통해 복합개발, 에너지, 지역산업 등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인 사안에 대한 관계부처·기관간 의견 조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들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는 재생에너지집적화 지구, 분산형전력망지구 외에도 산업시설지구 및 배후정주지구가 포함되며, 이들 2개의 지구(산업시설지구·배후정주지구)에 대해서는 안 제12조제7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등 기존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의 산업단지 개발체계를 함께 고려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안 제11조는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공동지정권자로 명시하고 있음¹³⁾.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감안할 때,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권자 또한 산업

13) 제11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 신청 및 직접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공동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6조는 재생에너지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¹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¹⁵⁾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관 기본계획과 일관되게 그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재생에너지자립都市는 당초 취지가 100% 재생에너지 자급률을 달성하는 독립된 전력 생산 및 소비 체계를 이상적인 목표로 설정하고는 있으나, 실제 도입 과정에서 초기에는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14)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5. 분산에너지 보급량에 관한 사항
6. 분산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7.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8.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 촉진에 관한 사항
9.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
10.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

③ ~ ⑤ < 생략 >

전력 공급에 현실적으로 의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를 고려하면,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권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추가하거나,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공동지정권자인 국토부장관과 공동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것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셋째, 제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종합발전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추진체제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는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회임.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산업통상부장관 단독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도 함께 포함될 필요가 있고, 재생에너지

지자립도시지원센터 지정 권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공동 권한으로 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해당 방안과 일관되게 간사 위원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¹⁶⁾

다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구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복수 간사 운영시 정기적인 간사교체로 업무 연속성 저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넷째, 정진욱의원안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지원센터를 김원이·김정호·안호영 의원안과 달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설치하도록 특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외에도 재생에너지자립도시지원 업무 분야 중 재생에너지 활성화, 국토개발 분야 등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에 대해서도 지원센터 지정을 검토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도 한국산업단지공단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재량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16) 이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 모두 간사위원에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하여 총 2명을 간사위원으로 두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해제 및 행위제한, 개발에 관한 사항

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지정권자로서 시·도지사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 참여기피 등의 사정이 있을 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 후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3장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 의 지정 및 조성 등		제3장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 의 지정 및 조성 등
제10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요건) ①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제10조(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요건) ①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종합발전계획에 부합할 것		1. 종합발전계획에 부합할 것
2. 충분한 재생에너지 공급과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2. 충분한 재생에너지 공급과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3. 산업·재생에너지공급·정주시설 등의 연계가 용이할 것		3. 산업·재생에너지공급·정주시설 등의 연계가 용이할 것
4.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 조성·운영에 필요한 부지와 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用水)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 조성·운영에 필요한 부지와 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用水)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김원이·김정호의원안	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요건을</u> 갖추는 것	5. 주민의 수용성 확보에 지장이 없을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요</u>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요건을</u> 갖추는 것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생에너지자립<u>도시</u>의 지정 신청 및 직접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공동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열람하게 하고,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 지정의 필요성 3.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생에너지자립<u>단지</u>의 지정 신청 및 직접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공동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열람하게 하고,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 지정의 필요성 3.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하는 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u>도시</u>개발사업과 <u>도시</u>연계사업의 내용,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5. 재원조달방법 6. 산업유치계획 7.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공급계획 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 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시행방법 다.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라.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계획 8. 산업기반시설등의 지원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포함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이미 지정된 해상풍력발전지구에 한정하여야 한다. ④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구를 모두 포함하여 지정·개발하는 방식 또는 그 일부를 지정·개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u>공동지정권자</u>는 재생에너지자립	당하는 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u>단지</u>개발사업과 <u>단지</u>연계사업의 내용,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5. 재원조달방법 6. 산업유치계획 7.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공급계획 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 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시행방법 다.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라.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계획 8. 산업기반시설 등의 지원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포함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이미 지정된 발전지구에 한정하여야 한다. ④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구를 모두 포함하여 지정·개발하는 방식 또는 그 일부를 지정·개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u>공동지정권자</u>는 재생에너지자립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u>도시</u>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변경지정 등) ① 공동지정권자는 제11조에 따라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를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지정하거나 직접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지정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동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공동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의 지정을 위하여	<u>단지</u>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변경지정 등) ① 공동지정권자는 제11조에 따라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를 시·도지사의 지정 신청 또는 직접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지정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동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공동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의 지정을 위하여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되, “지정”을 “변경지정”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 지정 또는 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본계획의 내용(제15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u>산업시설지구</u> 및 <u>배후정주지구</u>로 지정된 구역에 한함)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의 지정·변경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 해제 등) ① 공동지정권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사업시행자(제17조제1항 및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되, “지정”을 “변경지정”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 지정 또는 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본계획의 내용(제15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 <u>산업지구</u> 및 <u>정주지구</u>로 지정된 구역에 한함)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의 지정·변경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 해제 등) ① 공동지정권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사업시행자(제17조제1항 및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8항에 따른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시행자, <u>분산형전력망지구</u>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2.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제10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동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4조(행위제한 등)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8항에 따른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 <u>전력망지구</u>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2.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제10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동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4조(행위제한 등)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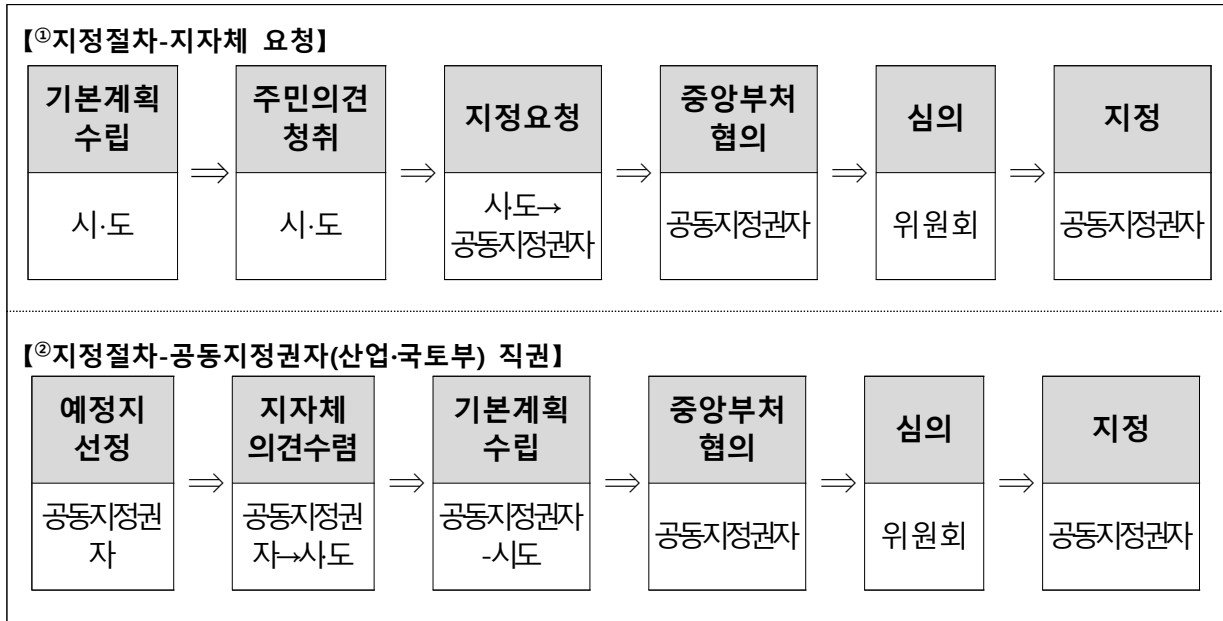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개발 등) ①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u>도시연계사업</u>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5.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재생에너지자립<u>단지</u>의 개발 등) ①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u>단지연계사업</u>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5.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
김원이·김정호의원안	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6. 「<u>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u>」에 따른 새만금 개발사업 7. 「<u>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u>」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는 개발사업	
②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계획이 수립·변경되어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계획의 수립·변경·승인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동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라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가 지정·고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의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조성할 계획으로 반영한 <u>산업시설지구</u> 및 <u>배후정주지구</u>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여야 한다.		②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계획이 수립·변경되어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계획의 수립·변경·승인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에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동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라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가 지정·고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의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조성할 계획으로 반영한 <u>산업지구</u> 및 <u>정주지구</u>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여야 한다.

제정안들은 시·도지사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보장(안 제11조제2항)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를 경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 절차에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조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따른 지자체요청 및 직권 지정 절차



자료: 산업통상부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은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공동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지정과 동시에 별도의 전력공급계획에 근거하여 전력계통에 대한 특례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 및 분산전력망지구에 속한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과 전력공급에 관한 사항이 변동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전력계통 연계 등을 위해 부지 내 일부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이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됨.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지정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제한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정안에 따라 벌금(안 제84조)이 부과됨.

이러한 법률적 효과를 감안하였을 때, 시·도지사의 동의 절차 없이 ‘협의’만을 거쳐 공동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지정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정안의 규정이 타당한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직권으로 지정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¹⁷⁾.

둘째, 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안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의 사업시행자, 분산형 전력망지구의 사업시행자를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1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정안 전체 조문에서는 ① 안 제17조에 따라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에 신규로 선정된 사업시행자, ② 안 제29조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자, ③ 안 제44조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사업시행자가 각각 규정되어 있어 법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안 제11조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해상풍력발전지구에만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⁸⁾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을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입법 의도가 분명히 표현될 필요가 있으므로¹⁹⁾, 필요 시 도시연계사업(안 제11조제2항제4호, 안 제15조제1항 각 호)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기본계획 포함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제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과정에서 공동지정권자의

18)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예비지구는 제외됨.

19) 특히, 기본계획의 내용은 안 제4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재량 및 기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보장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안 제11조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형전력망지구, 산업시설지구 및 배후정주지구를 모두 포함하여 지정·개발하는 방식이나 그 일부를 지정·개발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 제12조제7항은 안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른 개별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개발사업 중 산업시설지구 및 배후정주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제정안의 규정은 구체적인 여건에 따라 개발 지역의 범위 및 지구 지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른 개별 법률에 따라 추진 중인 개발사업도 국가산업단지 관리체계에 포섭시킴으로써 국가산단관리기관인 산업단지공단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당초 취지 달성 및 추진체계의 당위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을 산업시설로 연계하는

전력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의 자립을 달성하여야 하는데,

안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또는 분산전력망지구의 지정 및 개발, 배후정주지구의 지정 및 개발만이 이루어지고 각 지구별 기능 연계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정안을 통한 입법 목적 달성이 제한될 수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제정안의 일부 구역 지정 및 개발할 수 있는 요건으로, 기존의 지구 및 시설을 활용(또는 도시연계사업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전력망지구, 산업시설지구, 배후정주지구의 개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만 일부 구역의 지정 및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목적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일부 지구만 지정하는 경우에도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와 산업시설지구는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음.

또한, 안 제12조제7항에 따라 산업시설지구 및 배후정주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소재한 기존 사업자들의 경우 기업 소재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간주됨에 따라 기존의 개별 법률에 따른 관리체계가 아닌 한

국산업단지공단 및 산업통상부의 관리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이해관계의 충돌 및 반발이나 사업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국가산업단지로 일괄적으로 지정 간주하는 방식보다는 지구별 현황 등을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음.

마. 도시연계사업의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16조는 안 제15조제1항에 따라 규정된 ‘도시연계사업’을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기본계획에 편입하게 될 경우 기존 개발사업자에게 발생한 이익을 추정하고, 해당 이익을 공급가 인하, 공공시설 설치 등공익적 목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16조(산업기반시설 등의 지원에 따른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①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재생에너지자립 <u>도시</u> 의 지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25조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 이에 따라 발생	제16조(산업기반시설 등의 지원에 따른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①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재생에너지자립 <u>단지</u> 의 지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25조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 이에 따라 발생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되는 이익을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산업시설지구의 공급가격 또는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3. 제73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의 세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과 채투자자를 위한 비용의 산정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되는 이익을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생에너지자립단지 내 산업지구의 공급가격 또는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과 채투자자를 위한 비용의 산정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시 투입되는 정부의 재정 및 행정지원 혜택을 입주기업, 근로자, 지역주민 등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할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유사한 입법례²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

조의2는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공시설 설치·부지 제공·설치비용 납부 등을 통해 해당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안은 도시연계사업이 아닌 신규 지구 지정(산업시설지구 및 배후정주지구) 또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 선정에 따라 발생한 개발 및 부가이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공기여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도시연계사업 중 기존 개별 법률에 따라 수행되던 개발사업이 산업시설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해당 이익을 공익적 목적에 재투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²¹⁾

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 ⑥ < 생 략 >

21) 산업통상부는 도시연계사업으로 포섭되는 산업시설지구 외의 나머지 사례에 대해,

산업시설지구 중에서도 신규로 조성되는 지구의 경우 기존 제도(개발이익환수법, 산업입지법 등)를 통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의 경우 발전사업자가 본인 비용으로 직접 원형지에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므로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분산형전력망지구 또한 한전에서 개발·운영을 담당하며 개발이익 환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배후정주지구의 경우 기존 제도(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택지·도시 개발사업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개발이익의 환수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은 재생에너지자
립도시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이익 배
분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에 그 대상 및 범위, 금액의 산정과 관련된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제시되어 법 집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고려하면 제정안의 규정은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 인프라 구
축에 대한 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추
정하는 방식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상정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실제로 유사 입법례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한 취득원가 또는 감정평가액 기준의 추정 방식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 제16조제1항은 도시연계사업의 사업시행자만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 외에도 이미
개별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시설지구에 기업이 입주하였거나, 배후
정주지구 내 분양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의 대상
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도시연계사업이
아닌 개별 지구의 사업시행자나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서는 별도의 재투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개별 법
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만 공공기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

평성 차원에서 그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안 제16조제1항제3호는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발생된 이익을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재원확보 방안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바. 사업시행자의 선정

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낙찰자로 선정하고,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를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 등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개발실시 계획의 작성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17조(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등의 사업시행자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의 사업시행자(이하 “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재생에너지지구 등의 사업시행자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u>재생에너지지구</u> 의 사업시행자(이하 “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1. 발전단가 등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능력 2. 채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3. 이익공유 등 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 4. 재생에너지발전 산업경쟁력 확보 및 산업발전에의 기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입찰대상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입찰참가자의 자격기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시행자 선정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4.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발전단가 등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능력 2. 채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3. 이익공유 등 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 4. 재생에너지발전 산업경쟁력 확보 및 산업발전에의 기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입찰대상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입찰참가자의 자격기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 선정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4.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5.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준비와 실시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6.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시행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시행자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거나 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	5.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준비와 실시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6.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거나 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시행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u>분산형전력망지구의 사업시행자(이하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라 한다)</u>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u>전력망지구의 사업시행자(이하 “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라 한다)</u>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이하 “송전·배전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김원이·김정호의원안	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⑨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시행자 또는 개발시행자가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18조(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의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u>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재생에너지지구 및 전력망지구의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u>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 계획, 시행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시행자 및 <u>분산형전력망지구</u> 사업시행자, 해당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 실시계획 승인 시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 계획, 시행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 및 <u>전력망지구</u> 사업시행자, 해당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 실시계획 승인 시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 선정절차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선정과정의 공정을 확보하는 한편, 분산형전력망지구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분산형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이 직접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를 산업단지 내 공급하기 위해 전기설비, 전선로, 전기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치를 설치하는 지역'이고, 분산형전력망지구 또한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에서 생산된 '전기를 재생에너지자립 도시에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전선로, 지능형전력망 등을 설치하는 지역'으로, 두 지구 모두 재생에너지의 발전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로 이해됨.

따라서 선정기준, 평가, 입찰 공고 등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두 지구의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된 절차를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동의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마찬가지로, 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인·허가 사무처리 주체,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또한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동의 소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와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 사무로 규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음.

둘째, 안호영의원안 제17조제9항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내 다른 법률에 따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시행자 또는 개발시행자가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정안에 따른 사업시행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조율 필요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제정안은 분산형전력망지구의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배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공모 및 입찰을 통한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 선정 방식에 비해 특정 사업자 중심의 사업시행자 선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RE100 산단은 입주기업이 최소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RE100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망 구축 및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특성상 전력품질 유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계통 운영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분산형전력망 사업시행자 선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넷째, 인·허가 의제 사항과 관련하여 안 제19조제5항은 인·허가의제

가 적용되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사용료는 타 법률상 인허가와 같이 행정절차에 따른 수수료 성격이 아닌 재산에 대한 사용료로서 인허가 의제와 함께 사용료가 면제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사. 조성 중 토지의 관리 및 준공 등

제정안은 사업시행자 등이 사업대상지 내 타인 소유·점유 토지를 출입·사용하고 장애물 등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협의확보가 곤란한 사업부지 내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준공인가 신청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준공검사 및 최종인가 처분 후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21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① 재생에너지자립 <u>도시</u> 의 지정,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u>도시</u>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제21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① 재생에너지자립 <u>단지</u> 의 지정,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u>단지</u>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22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u>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22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u>재생에너지지구 및 전력망지구</u>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2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사업시행자는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u> 개발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제24조(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u>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산업통상부장관</u>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사업시행자는 <u>재생에너지지구 및 전력망지구</u> 개발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제24조(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u>재생에너지지구 및 전력망지구</u>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산업통상부장관</u>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⑤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의 의제를 위한 관계 서류의 제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의 의제를 위한 관계 서류의 제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정안의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타인 토지 사용 등 개발사업 추진여건을 보장함으로써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공공시설 등 개발시설의 귀속주체 및 준공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절차를 정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안 제22조는 제정안에 따른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소유권 외의 권리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에 대한 재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4조의2는²²⁾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같은 조 제2항은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별 법률에서 특례 신설에 따라 토지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특례가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권한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의 별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준공인가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므로 준공인가의 주체로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공동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준공인가 주체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동으로 명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음.

아. 개발 지원 특례 등

제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산업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활성화를 위해 「산지관리법」에 따른 규제 특례와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절차간소화 특례 등을 부여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25조(산업기반시설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 인프라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25조(산업기반시설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 인프라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26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및 <u>분산형전력망지구</u>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및 <u>분산형전력망지구</u>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로 조사할 수 있다. 제28조(「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도	제26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u>재생에너지지구</u> 및 <u>전력망지구</u>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u>재생에너지지구</u> 및 <u>전력망지구</u>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로 조사할 수 있다. 제28조(「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도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불구하고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및 <u>분산형전력망지구</u>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만을 실시한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조정 요청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다만,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이 아니거나 협의시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다.	불구하고 <u>재생에너지지구</u> 및 <u>전력망지구</u>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만을 실시한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조정 요청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다만,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이 아니거나 협의시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다.

제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등 여건을 확충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시 조성 및 개발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규제 및 절차를 완화함으로써 사업추진동력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7조의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를 보면,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23)24)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

23)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

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집적화 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의 공동 지정권자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대하여도 협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및 환경영향 조사의 주체 또한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자. 재생에너지 및 전력 공급에 관한 사항

제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산업시설지구 등에 대하여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의 전기 공급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전용 전기공급사업자의 선정,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의 의무, 전력계통연계,

나기 전까지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보완·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보완·조정이 가능한 경우

2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0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계통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29조(<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가 지정된 이후 해당 지구에서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u> 이외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u>재생에너지지구</u> 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 <u>재생에너지지구</u> 가 지정된 이후 해당 지구에서 <u>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u> 이외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시행자의 의무) ①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u> 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에게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용 전기공급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u>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u>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9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기의 공급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13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기의 판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이하 “전기판매사업자”라 한다)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기의 공급(같은 법 제31조제1항 단서	제30조(<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의 의무) ①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u>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u> 는 생산한 전기의 전부를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산업지구의 입주기업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용 전기공급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u>생산한 전기의 전부를 산업지구의 입주기업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u>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9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기의 공급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13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기의 판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이하 “전기판매사업자”라 한다)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기의 공급(같은 법 제31조제1항 단서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급방식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전기 등의 공급 ③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판매·공급 가격은 제17조에 따라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시행자 선정 시 고려한 발전단가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의 의무) ① 정부는 <u>분산형전력망지구</u> 사업시행자에게 복수의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한다)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u>분산형전력망지구</u>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u>분산형전력망지구</u> 사업시행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시행자 또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동접속설비의 건설과 운전유지 등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③ <u>분산형전력망지구</u> 사업시행자는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에서 생산된 <u>재생에너지 전기를 산업시설지구</u>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u>산업통상부장관</u>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급방식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전기 등의 공급 ③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판매·공급 가격은 제17조에 따라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 선정 시 고려한 발전단가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의 의무) ① 정부는 <u>전력망지구</u> 사업시행자에게 복수의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한다)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u>전력망지구</u>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u>전력망지구</u> 사업시행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 또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동접속설비의 건설과 운전유지 등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③ <u>전력망지구</u> 사업시행자는 <u>재생에너지지구</u>에서 생산된 <u>재생에너지 전기를 산업지구</u>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u>산업통상부장관</u>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32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전기공급에 관한 사항)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u>산업시설지구의</u> 입주기업에 대한 전기 공급 및 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에서 생산된 전기를 <u>전력시장</u>을 거치지 아니하고 <u>산업시설지구의</u> 입주기업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에서 생산된 전기가 <u>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통해 부족한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u> 1. <u>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기의 구매</u>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의 <u>전력시장(이하 “전력시장”이라 한다)을 통한 전력의 거래</u> ④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에서 생산된 전기가 <u>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의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u>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시장을 <u>통하여</u> 전기를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다.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u>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및 제4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u>	제32조(재생에너지자립단지 내 전기공급에 관한 사항)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내 <u>산업지구의</u> 입주기업에 대한 전기 공급 및 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u>재생에너지지구</u>에서 생산된 전기를 <u>전력시장</u>을 거치지 아니하고 <u>산업지구의</u> 입주기업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u>재생에너지지구</u>에서 생산된 전기가 <u>산업지구의 입주기업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 외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u>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급한 전기가 <u>산업지구의 입주기업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u>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u>다음 각 호를 통해 부족한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u> 1. <u>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기의 구매</u>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의 <u>전력시장(이하 “전력시장”이라 한다)을 통한 전력의 거래</u> ⑤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u>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급한 전기가 산업지구의 입주기업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u>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시장을 <u>통하여 그 초과분의</u> 전기를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다. ⑥ 전기판매사업자는 <u>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 및 제5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u>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아니된다.		아니된다.
김원이·김정호의원안	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⑥ 전기관매사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전기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에서 생산된 전기가 사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의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사업자로서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해당 수소를 같은 법에 따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소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전기관매사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전기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전기관매사업자는 제4항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전기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⑦ 전용 전기공급사업자의 선정 절차, <u>산업시설지구의</u> 입주기업에게 공급하는 전기의 요금, 공급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전용 전기공급사업자의 선정 절차, <u>산업지구의</u> 입주기업에게 공급하는 전기의 요금, 공급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에서 생산된 전기가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의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사업자로서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해당 수소를 같은 법에 따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소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의2(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감면 특례) ①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산업시설지구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 범위, 감면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전력계통연계)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배전사업자(이하 “송전·배전사업자”라 한다)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가 생산한 전기의 전부를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통연계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와 연계된 변전소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신규 전력수요(산업시설지구 외 전력수요를 의미한다)와 체결하는 전력공급 계약에 대해서도 입주기업에 대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맞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18조 및 제27조의2에 따	제33조(재생에너지지구 전력계통연계) ① 송전·배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가 생산한 전기의 전부를 산업지구 입주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통연계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는 재생에너지지구와 연계된 변전소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신규 전력수요(산업지구 외 전력수요를 의미한다)와 체결하는 전력공급 계약에 대해서도 입주기업에 대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재생에너지지구 사업시행자가 재생에너지지구 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맞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18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전기품질 및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른 전기품질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가 가능한 경우 송전·배전사업자는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계통에 접속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가 가능한 경우 송전·배전사업자는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계통에 접속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김원이·김정호의원안	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용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변동이나 계통 제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하는 전력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부족전력의 공급)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u>산업시설지구의</u> 입주기업이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의 방식으로 공급받는 재생에너지 전기가 전기 사용량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족한 전기를 <u>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에게</u> 공급하는 경우 <u>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하여야 한다.</u> 제35조(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제34조(<u>전용 전기공급사업자 미선정시</u> <u>부족전력의 공급</u>) 전기판매사업자는 <u>산업지구의</u> 입주기업이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의 방식으로 공급받는 재생에너지 전기가 <u>산업지구의</u> 입주기업 전기 사용량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35조(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1.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2. 「<u>농지법</u>」 제34조부터 제36조의2에 따라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로 허가·협의·신고 등이 된 농지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농지의 임차인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참여대상 주민의 범위 및 관련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이격거리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시행자가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u>재생에너지 발전설비</u>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이격거리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및 <u>분산형전력망지구</u> 내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1. <u>재생에너지지구</u>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2. <u>재생에너지지구</u> 조성을 위하여 「<u>농지법</u>」 제34조부터 제36조의2에 따라 허가·협의·신고 등이 된 농지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된 경우 해당 농지의 임차인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참여대상 주민의 범위 및 관련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u>재생에너지지구</u> 이격거리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가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u>재생에너지 발전설비</u>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이격거리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국·공유재산 등의 임대료 감면 등) ①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u>재생에너지지구</u> 및 <u>전력망지구</u> 내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재산(이하 “국·공유재산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u>사업시행자</u>에게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2. 공공기관 ②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자로부터 국·공유재산을 임대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및 <u>분산형전력망지구</u>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국·공유재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u>분산형전력망지구</u> 사업시행자가 <u>분산형전력망지구</u> 내에 송전·변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발전 및 공급 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②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자로부터 국·공유재산등을 임대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을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등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u>재생에너지지구</u> 및 <u>전력망지구</u>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국·공유재산등의 임대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u>전력망지구</u> 사업시행자가 <u>전력망지구</u> 내에 송전·변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발전 및 공급 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u>재생에너지지구</u>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친환경 전력 사용 전환 및 계통 안정화에 따른 지원) ① <u>정부는</u>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 <u>자가</u> <u>경제적인 수준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u>정부는 제1항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 1. <u>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감축 비율</u> 2. <u>전력계통 효율성 제고 및 안정화에 대한 기여도</u> 3. <u>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③ <u>제2항 각 호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0조(<u>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u>) <u>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u> 제41조(<u>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u>)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이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를 자신의 부지 내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u>	을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친환경 전력 사용 전환 및 계통 안정화에 따른 지원) <u>정부는</u>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 <u>자에게</u>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u>산업지구 입주기업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u>) <u>산업지구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u> 제41조(<u>산업지구 입주기업의 자가용 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노력 및 지원</u>) ① <u>산업지구 입주기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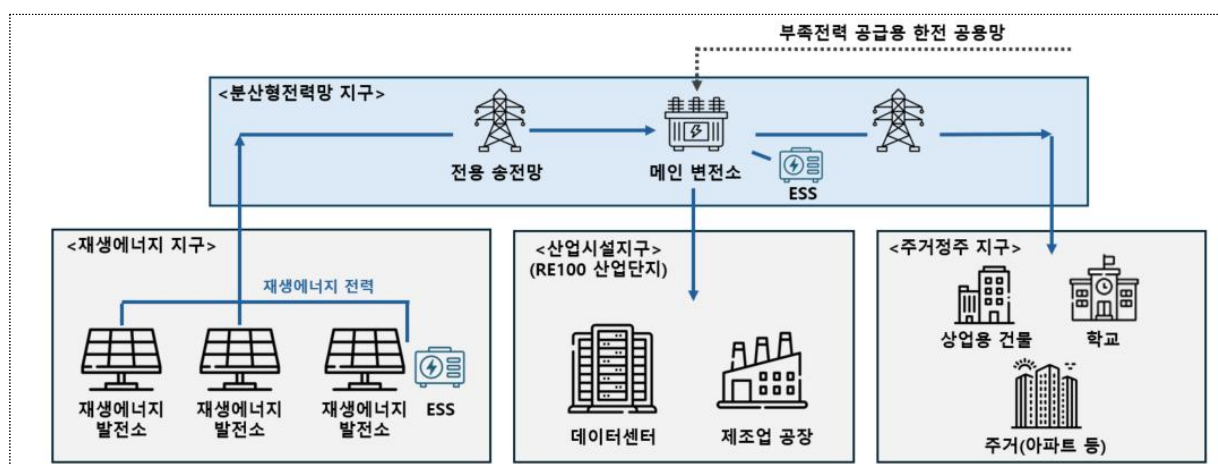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u>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u> 제42조(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 전력망을 설치하거나 공공성, 안정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금 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제43조(재생에너지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망 활성화를 위하여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의 사업시행자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자원안보 요소를 고려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지원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지구 입주기업이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를 자신의 부지 내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 전력망을 설치하거나 공공성, 안정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금 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제43조(재생에너지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망 활성화를 위하여 <u>재생에너지지구</u>의 사업시행자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자원안보 요소를 고려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지원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입주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지집적화 지구를 개발하고, 입주기업에 저렴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발전단가가 낮은 신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지 규제 특례, 설치비 및 임대료 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임. 또한, 분산형 전력망지구에 대해서는 계통포화지역에 전용망²⁵⁾을 구축하여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임.

이와 같은 계획 하에 제정안은 다수의 발전설비와 다수의 입주기업 간 재생에너지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용 요금제를 신설²⁶⁾하여 기존의 한국전력공사를 통한 전력거래가 아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한 전력의 공급을 도모하여 에너지 자급률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임.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재생에너지·전력 공급 개념도



자료: 산업통상부

25)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로부터 산업시설지구, 배후정주지구로의 전기 공급은 한전 공용망이 아닌 전용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

26) 현재 PPA 제도는 정산 방식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비율이 1:1, 1:N, N:1 형태만 가능한 체계인바, 산업통상부는 제정안 시행을 통해 N:N의 전력거래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임.

이에 따라 안 제29조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내 사업시행자 외의 재생에너지 신규 전기사업허가를 금지하고, 안 제30조 및 제31조는 전력 공급의 핵심 주체인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규율하고 있음.

이어서 안 제32조는 기존 PPA 제도로는 저렴하게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하기 어렵고 계약 방식 또한 전력시장 재생에너지 정산 가격을 추종하여야 하는 등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선정하여 입주기업에게 전용 단일요금제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안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의 전력계통연계(제33조), 부족전력의 공급(제34조),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구성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근거 마련(제35조), 이격거리 적용 특례(제36조), 그 밖의 사업시행자의 수익 보장을 위한 임대료 감면(제37조), 재정지원(제38조), 계통 안정화에 대한 지원(제39조~제41조),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대한 지원(제43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들은 기존의 PPA를 통한 전력 생산과 소비간 직접 연계 방식보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통한 전력 생산 및 소비 모델의 차별점인 적정 전력단가 산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 체계 확보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 전용 전기공급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규제와 인가, 그 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김원이의원 안 제30조제3항은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에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판매·공급 가격을 사업시행자 선정 시 고려한 발전단가와 같거나 낮게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전용 전기공급사업자에 대하여는 안 제32조제7항에서 전기요금 및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전기요금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규제를 전제로 하고 있음.

다만,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의 선정의 경우 안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입찰공고를 통해 경쟁 입찰의 원칙 하에 선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분산형전력망 사업시행자의 경우 안 제17조제8항에 따라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중에서 선정하는 방식이며, 마찬가지로 전용 전기공급사업자의 경우에도 안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전단가 변동 위험에 대한 가격 반영 등 적정 전기요금 책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한 관리기관의 확인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31조제3항은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산업시설지구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안 제18조제1항에서 각 지구별 사업시행자의 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의 실익이 다소 낮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도 안 제31조제3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실익이 낮으므로 삭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음.

셋째, 안 제32조제1항은 전용 전기공급사업자의 선정 주체를 정부로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전기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인가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선정 및 전기공급약관

인가의 주체로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함께 문언에 명시하여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마찬가지로, 안 제40조는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의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주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규정의 특례 사항이므로 해당 법률의 소관 주체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주어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넷째, 안 제34조제1항은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미선정 시 부족전력이 발생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부족전력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정진욱의원안은 정진욱의원안은 별도의 전기 공급약관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반면,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은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부족전력의 공급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의 기존 계통을 이용한 전력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 공급약관이 원칙으로 준수될 필요가 있고, 필요 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하하거나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충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섯째, 안 제39조는 정부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자가 경제적인 수준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경제적인 수준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등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는 WTO 협정상 분쟁 소지²⁷⁾가 있으므로 통상법적 체계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여섯째, 안 제42조는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 전력망을 설치하거나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이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²⁸⁾의 지능형전력망 사업

27)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재정지원 시, 재정적 기여, 혜택 부여, 특정성(특정 산업·기업·지역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협정 위반으로 간주

28)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투자비용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공공성, 안전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금 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자에 대한 투자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한 입법례로 보이는데,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있는 제정안과 달리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²⁹⁾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지원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 새로이 규정할 경우 기존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강의 내용을 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안 제37조의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에 관하여 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가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29)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
 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유상 매각을 원칙으로 하는 공유재산법령의 특성상 ‘매각’으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차.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입주한 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지원과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44조(조세 감면에 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및 입주기업 근로자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관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사업시행자, 입주기업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사업시행자,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 기금 제46조(임대전용용지의 공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산업시설지구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전용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용지의 공급·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및 제46조의7에 따른다. 제47조(부담금 감면등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감면한다</u>. 다만, <u>산업시설구역</u>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제5호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제48조(기술개발사업의 지원)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실현에 필요한 기	제44조(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u>. 다만, <u>산업지구</u>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제5호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술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분야 연구개발사업 2.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기술개발사업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인재의 양성·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기업 수요와 연계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 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외의 지역 내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3. 입주기업에 필요한 신규 인력 공급 및 기존 인력 재교육 등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위탁교육 또는 컨설팅 사업 4. 입주기업의 인재 관리를 위한 지원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사업 및 해외 우수 인재 양성 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자립단지 입주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자립단지 내 산업 및 입주기업 관련 계약학과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입주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국·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 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이나 연구원이 6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7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입주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8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10조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9조(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49조(보육기반 확충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의 방식으로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목적 달성과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등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택공급기준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제51조(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50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비·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1조(교육재정 지원의 특례) ①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운영할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수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2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해당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도 교육감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율학교의 장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율학교의 장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외국어 전문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제53조(전학·입학의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학·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 특례)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입주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55조(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지원 또는 용자를 하는 경우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우대할 수 있다.	제5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56조(의료기관 지원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에 입주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u>의료기관</u>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 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로 본다. 제53조(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에 입주하는 <u>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u>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57조(「폐기물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서 폐기물처리업 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 조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다. ②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서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폐기 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 의를 거쳐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	있다. 제55조(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재 생에너지자립단지 사업시행자 및 입주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업무 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처리 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 토 및 결과 통보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 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제출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처리 4.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5. 그 밖에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련 연 구개발·투자·제품생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사항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달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제58조(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 및 지원사업 2. 제48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3. 그 밖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지연되어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운영, 재생에너지의 공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허가권자에게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산업통상부장관은 인·허가권자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을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하여야 하며,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회신한 인·허가권자는 회신일부터 15일 이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등의 처리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인·허가등의 신속처리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 운영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8호, 같은 법 제28조의5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의 자격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2.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을 위한 공장 부대시설의 개념	제56조(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 ①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 부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완료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1.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 부여의 필요성 및 적정성 2. 재생에너지자립단지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효과 3.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서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규제에 대한 특례의 부여를 요청하는 것일 때에는 이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해당 규제의 개선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자립단지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해당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에 직접 규정된 규제 2. 노동·환경·안전 관련 법률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 및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⑤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유효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3조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항 후단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할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를 부여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부여 기준·절차 및 방법,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관리·감독 및 취소·변경) ① 산업통상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할 시·도지사는 제56조제3항에 따라 부여된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를 공동으로 관리·감독하며,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 유효기간 내에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지특례의 신청 또는 운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여한 재생에너지자립단지 특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부여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를 부여받은 경우 2. 제5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56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지방투자 및 기업의 유치·촉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부여가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할 시·도시사는 제4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적용을 받는 기업 또는 근로자 등에게 이를 통보하고, 취소 또는 변경된 사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적용을 즉시 중단하거나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58조(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2. 「산업융합 촉진법」 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7.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9. 그 밖에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입주기업이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재생에너지자립단지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역·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특구·지구·단지·도시 등으로 지정·조성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2.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의 지정 3.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5.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1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 11. 그 밖에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지정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60조(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1조(관광사업 지원의 특례) 정부는 지역주민 및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삶의 균형,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제44조~제61조, 정진욱의원안 제44조~제56조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기술 확보, 정주·교육여건 개선, 조세 감면, 임대전용용지의 공급 등 인센티브 제공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필수적인 기업 유치 및 정주 인구 확보를 도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각 특례 규정에 대한 쟁점사항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제정안은 조세 감면(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제44조),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제45조), 부담금 감면(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제47조) 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해당 지원 및 특례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 때 사업시행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안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연계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도 포함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특례와 지원 제공 범위와 관련하여 법 해석상의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특례 내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시행자’ 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들에 명시된 특례의 규정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이견이 제기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먼저,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과 관련하여서는, ① 안 제44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에 대한 감면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법에 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서는 조세 특례를 실시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제시³⁰⁾하였고, ② 안 제47조 단서에 산업시설구역 입주기업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상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강행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③ 안 제58조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통일성 제고 측면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④ 안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규정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는 세입재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부분의 재원을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조달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감안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고용노동부는 안 제55조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은 지원요건 해당 시 당연 적용되는 사항이며, 안 제2항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우대 지원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 제1항과 같이 특정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관련 비용을 우선 지원

30) 「지방세특례제한법」 또한 제3조제1항에서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 제57조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특례와 관련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가 아닌 산업시설지구로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산업시설지구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특례의 적용 대상을 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지 않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보건복지부는 안 제56조제3항과 관련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의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49조³¹⁾에도 불구하고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으로 한정하여 특례 부여 자격을 명확히 할 필

31)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정진욱의원안 제56조 및 제57조는 시·도지사가 재생에너지자립단지(또는 도시)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된 규제와 노동, 환경, 안전 관련 규제를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이하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 부여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동 특례의 부여, 관리, 감독 및 취소, 변경 등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어서 안 제58조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개별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등을 위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욱의원안
제56조(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 ①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 부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완료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 부여의 필요성 및 적정성 2. 재생에너지자립단지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효과 3.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서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정진욱의원안

4. 그 밖에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규제에 대한 특례의 부여를 요청하는 것일 때에는 이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해당 규제의 개선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자립단지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해당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에 직접 규정된 규제

2. 노동·환경·안전 관련 법률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 및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

⑤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유효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3조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항 후단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할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를 부여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부여 기준·절차 및 방법,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관리·감독 및 취소·변경) ① 산업통상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할 시·도지사는 제56조제3항에 따라 부여된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를 공동으로 관리·감독하며,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 유효기간 내에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신청 또는 운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명

정진욱의원안

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여한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부여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를 부여받은 경우
2. 제5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56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지방투자 및 기업의 유치·촉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부여가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할 시·도사는 제4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적용을 받는 기업 또는 근로자 등에게 이를 통보하고, 취소 또는 변경된 사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적용을 즉시 중단하거나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2. 「산업융합 촉진법」
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7.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9. 그 밖에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입주기업이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제정안과 같이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검토 및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규제 특례 부여 여부가 결정되면, 개별 법령 등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에서 예외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카.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관리권자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관리기관을 재생에너지자립지원센터로 하며,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본계획 승인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관리기본계획 수립·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부지 등 재산의 처분 절차, 건축허가의 제한, 온라인지원시스템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조문대비표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62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관리) ①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지원센터가 된다. 다만, 지원센터는 <u>산업시설지</u> 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리를 대	제62조(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관리) ①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지원센터가 된다. 다만, 지원센터는 <u>산업지구</u>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리를 대통령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김원이·김정호의원안	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②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각 지구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의 관리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³²⁾ 관리기관은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 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야 하며, 관리권자는 승인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권자가 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당		② 관리기관은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 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야 하며, 관리권자는 승인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권자가 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당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의 위치 및 면적 3.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4. 용수, 에너지, 통신 및 교통 시설 등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에 한함) 7. 그 밖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제6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 <u>분산형전력망지구</u>, <u>산업시설지구</u>, <u>배후정주지구</u>로 구분하며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의 위치 및 면적 3.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4. 용수, 에너지, 통신 및 교통 시설 등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에 한함) 7. 그 밖에 재생에너지자립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제6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u>재생에너지지구</u>, <u>전력망지구</u>, <u>산업지구</u>, <u>정주지구</u>로 구분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 ⑧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주체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지원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3조(산업시설지구 등에 대한 관리) ① <u>산업시설지구</u>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관리기본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중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개발된 해상풍력발전지구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따른다. 제64조(입주계약) ①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u>(제63조제3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u>산업시설지구</u>(제6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 ⑧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주체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지원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3조(산업지구 등에 대한 관리) ① <u>산업지구</u>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관리기본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재생에너지지구 중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개발된 해상풍력발전지구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따른다. 제64조(입주계약) ① <u>재생에너지지구</u>(제63조제3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u>산업지구</u>(제6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입주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같다)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u>산업시설지구</u>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64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입주기업이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 입주기업이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u>산업지구</u>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64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입주기업이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 입주기업이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② <u>입주기업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경우 관리기관은 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준용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u> ③ 관리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③ 관리기관이 <u>제2항에서</u>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6조(건축물등의 양도) ① 입주기업이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산업시설지구</u>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산업시설지구</u>의 건축물등을 양수·임차·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려는 자는 미리 관리기관과 제64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u> 1.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부지의 취득가격 나.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	④ 관리기관이 <u>제3항에서</u>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6조(건축물 등의 양도) ① 입주기업이 <u>재생에너지지구 및 산업지구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u>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u>재생에너지지구 및 산업지구의</u> 건축물등을 양수·임차·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려는 자는 미리 관리기관과 제64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u> 1.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부지의 취득가격 나.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평가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u>경매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산업시설지구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64조에 따른 임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 제68조(임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임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등을 양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	물」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u>경매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 및 산업지구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64조에 따른 임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 제68조(임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임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등을 양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9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① 관리기관은 제64조(제66조제2항 및 제67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기업이 소유하는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산업시설지구</u>의 건축물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업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70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산업시설지구</u>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4조에 따른 입주계약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66조제2항에 따라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산업시설지구</u>의 건축물등을 양수·임차·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려는 자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 제67조에 따라 경매 등의 방식으로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9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① 관리기관은 제64조(제66조제2항 및 제67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기업이 소유하는 <u>재생에너지지구 및 산업지구</u>의 건축물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업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70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u>재생에너지지구 및 산업지구</u>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4조에 따른 입주계약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66조제2항에 따라 <u>재생에너지지구 및 산업지구</u>의 건축물등을 양수·임차·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려는 자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 제67조에 따라 경매 등의 방식으로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4. 제68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업 제71조(온라인지원시스템의 활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4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제68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업 제71조(토지의 분할 등) ① 재생에너지지구 및 산업지구 내 토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토지를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가격의 산정과 적용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온라인지원시스템의 활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62조 단서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지원센터 업무 중 산업시설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새만금산업단지와 같이 이미 관리청이 있는 구역을 포함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관리청인 새만금개발청이 계속하여 국가산업단지를 관

32) 안호영의원안 제62조제2항의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조문 내용은 동일하나 제3항으로 반영됨. 이하도 이와 같음.

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만,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관리권한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지원센터로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음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법」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고유 권한 및 업무로 본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동 제정안을 통해 위탁의 형식을 통해 관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새만금개발청의 지위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단서의 표현을 개별 법률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포함되는 구역에 대한 관리 권한이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대비 정진욱의원안에 추가로 포함된 재생에너지자립단지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정진욱의원안 제65조제2항은 입주기업으로 하여금 공장설립등

의 완료신고를 한 경우 관리기관은 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준용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산업시설지구 등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입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의 등록 절차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음으로, 정진욱의원안 제66조는 입주기업이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산업시설지구의 부지, 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 때의 양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취득가격 기준 적정 가격(부지) 또는 감정평가액(시설 또는 건축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비해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제66조는 양도가격에 대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항상 취득가격 기준 적정 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의 취지 및 지구 조성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를 고려할 때 입주기업이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산업시설지구의 건축물등을 양도함에 따라 얻는 양도차익에 대한 적정 통제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정진욱의원안 제71조는 토지의 분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산업지구(산업시설지구)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지구(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내 토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³³⁾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의 규정에 따른 경우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의 사업시행자 및 산업시설지구의 사업시행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할 수 있고, 입주기업체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거나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분할된 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의 산정과 적용 기간에 대하여 정진욱의원안 제71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① 관리권자·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분할(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용지의 면적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면적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산업시설구역등 외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여건상 분할 면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지식산업센터의 산업용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제2호에서 같다)을 처분하는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산업시설구역등 외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여건상 분할 면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자는 분할된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용수·상하수도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 ⑤ < 생략 >

하고 있음.

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김원이·김정호· 안호영의원안)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해당 특별회계의 재원 및 운용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제72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73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의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매각대금 및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4. 출연금 또는 보조금 5. 차입금 6.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의 토지를 이용한 수익금 및 제16조에 따른 수익금 7. 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수익사업의 수익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용지의 조성 비용 2.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 3.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송전·변전설비 구축·운영 비용 4. 친환경 전력 사용 전환 및 계통 안정화에 따른 지원, 입주기업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대한 지원 등의 비용 5.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제74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는 융자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8. 그 밖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
③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5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6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7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김원이의원안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경우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지속적 확보를 통해 RE100 자립도시의 조기성과 창출 및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특별회계 설치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14조³⁴⁾에 부합하지 않고,

34)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대부분의 재원을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조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파.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위한 특례(김정호의원안)

김정호의원안은 산업단지 내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규정을 둠.

김정호의원안
제8장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위한 특례 제78조(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대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의 지붕·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79조(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등)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의 지붕·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 발굴,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김정호의원안

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80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이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출연·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1조(「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①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의 지붕·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의 지붕·옥상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3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임대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의 지붕·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한 자에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가중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설치용량에 따른 가중치 차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9조에 따른 금융상·재정상의 지원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김정호의원안은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 기반 확충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공장건축물 지붕·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태양

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또는 단지) 내 전력의 생산 및 공급체계 정비를 통한 RE100 달성이라는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정안보다는 산업단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일반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임.

하. 보칙 및 벌칙 등

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의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임직원의 파견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과 함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특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을 보칙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받은 자나 행위 제한에 관한 금지 규정을 어긴 자, 신고 없이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김원이·김정호 ³⁵ ·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78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단 및 지원센터의 업무	제73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단 및 지원센터의 업무

김원이·김정호 ³⁵⁾ ·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7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센터,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센터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이나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 개발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지원센터 및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을 하는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80조(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하여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센터,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센터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이나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 개발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지원센터 및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을 하는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75조(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하여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

김원이·김정호 ³⁵⁾ ·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u>재생에너지자립도시</u>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제47조, 제60조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8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	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u>재생에너지자립단지</u>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제44조 및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중 공무

김원이·김정호 ³⁵⁾ ·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원이 아닌 사람 2. 사업시행자 및 전용 전기공급사업자의 임직원 3. 지원센터의 임직원 4. 제8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8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자</u> ②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u>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u>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4조(제66조제2항 및 제67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이 아닌 사람 2. 사업시행자 및 전용 전기공급사업자의 임직원 3. 지원센터의 임직원 4. 제7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제7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재생에너지지구 및 전력망지구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자</u> ②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u>재생에너지지구 및 전력망지구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u>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4조(제66조제2항 및 제67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김원이·김정호 ³⁵⁾ ·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생에너지자립<u>도시</u>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 ⑥ 제64조제1항후단에 따른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6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	제56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특례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8조에 따른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받은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생에너지자립<u>단지</u>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 ⑥ 제64조제1항후단에 따른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6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

김원이·김정호 ³⁵⁾ ·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 -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입주기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 제2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제7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 -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입주기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 제2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제5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제5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생에너지 <u>자립단지</u>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해당 특례를 계속 이용하거나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 자 - 제74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35) 김정호의원안의 경우 김원이·안호영의원안 대비 제8장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위한 특례에 관한 6개 조항이 추가되면서, 제9장 보칙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이 제84조부터 제92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음. 조문 번호 외에 내용은 김원이·안호영의원안과 동일함.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과 달리 정진욱의원안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단지특례에 관한 사항과 제58조에 따른 임시허가 및 실증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해 안 제76조에서의 적극행정 면책 특례, 안 제79조제4항 각호에 따른 벌칙사항, 안 제8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항이 추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또는 단지)에 대한 지원사항에 따라 관련 보칙 및 벌칙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김원이·김정호·안호영의원안 제86조 및 정진욱의원안 제81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가 부과된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행확보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제정안에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부칙과 관련하여, 김원이·안호영·정진욱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김정호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 시행에 따른 시행령 입법 및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진욱의원안 부칙 제3조는 국가AI컴퓨팅 센터로 지정된 입지에 대하여 제정안에 따른 전력요금 등의 지원사항을 적용받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제정안의 취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부칙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임.

김원이·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u>3개월</u>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u>3개월</u>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에 연번 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3	「재생에너지자립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253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재 생 에 너 지 자립도시		재 생 에 너 지 자립 단지
		제3조(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AI컴퓨팅 센터로 지정된 입지는 재생에너지자립단지에 적용되는 전력요금 등 지원사항을 적용받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노동, 환경, 안전 관련 법률	

김정호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u>6개월</u>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김원이·안호영의원안		정진욱의원안
253	「초광역권 재생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재 생 에 너 지 자립도시

문 의 처
02)6788-5468